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3.11.20.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8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3년 11월 20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선우근

####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 12. 12.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  
개편 가이드 라인 기준에 맞게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과 전문  
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를 명시함.
- (2) 안 별표1에서는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에  
포함함.

- (3) 안 별표2에서는 직종개편 후의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함.
- (4) 안 별표3에서는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 【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

구 分	총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 정 직				기능직	연구직
			소 계	5급 이 상	6급 이 하	전 문 경 력 관	소 계	5급 상 당	6급상당 이 하			
현 행	1,274	1	1,031	65	966	<신설>	15	2	13	227	-	
개 정	1,274	1	1,267	65	1,201	1	5	2	3	<삭제>	1	
증 감	-	-	+236	-	+235	+1	△10	-	△10	△227	+1	

###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내용】

- 기능직(227명) => 일반직(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
  1. 일반직(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전환(143명) : 4개 직렬(방호, 운전, 위생, 조무)
  2. 일반직(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84명) : 4개 직렬(전기, 기계, 농림, 사무)
- 계약직(23명) =>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
- 별정직(15명)
  - => 비서·비서관, 의회전문위원(5명) : 별정직 존치
  - => 전문경력관 전환(1명) : 민방위·화생방 관리원
  - => 일반직 유사직렬 전환(5명) : 체육지도사, 광고물관리원, 영양사
  - => 일반직 구의회 속기직렬 신설 전환(4명)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였으며,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에 따른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12.12.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 처리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에도 저촉됨이 없고, 2013.11.7. ~ 2013.11.11.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공포된 이후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12.12. 이전까지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물론 이후 추진일정에 따른 단계별 이행절차를 준수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